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(알선수재)·사기

[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11. 18. 2011고합662]

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

【검 사】이승호

【변 호 인】 변호사 함종길

【주문】

1

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.

다만,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피고인으로부터 3,050만 원을 추징한다.

【이유】

]

[이유]

]

[이유]

1

[이유]

]

[이유]

]

[이유]

]